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023. 02. 27.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2. 6. 이성배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3. 2. 9.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2. 27. 상정·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이성배 의원)

1. 제안이유

- 근래 급변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주택・건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주거정책심의기구가 필요함.
- 특히 정비사업제도 및 역세권 사업, 공공주택 정책 등 개별 부서 단위로 는 해결할 수 없는 정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유연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기구인 주택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여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복잡한 제도·사업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정택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1) 개요

-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택·건축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이하 "조례")에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9조의3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3년 2월 6일 이성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신설되는 안 제9조의3은 총 7개 항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정안 주요 내용 (안 제9조의3)

(제1항) 주택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 및 역할

(제2항) 자문단의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이상 25명 이하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방식

: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

(제4항) 자문단 세부조직

: 필요시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설치 가능

(제5항) 위원회 제척,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 제15조~제17조 준용

(제6항) 자문단의 존속기한

: 시행 후 5년

(제7항)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문단 회의를 통해 위원장인 결정

○ 개정안에 따른 자문단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집행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1)2)로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3)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요건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선행검토가 필요하겠음.

- 먼저 위원회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위원회 설치요건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주택·건축정책과 관련한다양한 이슈에 주택행정이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설치·운용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요건인 ▲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위원회조례제6조제1항제1호) 및 ▲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위원회조례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위원회조례제6조제2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¹⁾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그 의사는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 그 의사를 채택하는지 여부는 행정관청이 이를 결정하게 됨. (임병수(2009),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²⁾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며,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2020), 법령 입안·심사 기준)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quot;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u>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u>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자문단 설치 필요성

- 현재 주택정책 분야는 고령・1인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주택 자산 양극화에 따른 세대 간 격차심화, 주택거래 침체와 이자율 급등에 따른 주택・금융시장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그동안 서울시는 소관부서별로 당면한 주택문제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시행해 왔으나(검토보고서 붙임2 참조), 최근 범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향후 주택정책 및 정비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주택시장 연착륙 해소방안 마련 등 미시 적·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4)

⁴⁾ 최근 4년('19.~'22.) 간 주택정책실(구 주택건축본부 포함)에서 실시한 주택 및 건축 관련 자문회의 개최 건수를 토대로 2023년 자문회의 개최 횟수를 산정해 보면 약 84건으로 추정되는데, 코로나19 엔데믹 등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한 대면 자문회의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주택정책실 자문회의 개최 건수 및 2023년 예상 개최 건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	:1년	2022년	2023년 (추정치)
자문회의 개최 건수 (건)	79	51	62	09 47	77	84 ^{주1)}
 자문회의 개최 건수 (건/부서 수)	9.8	6.3	7.7	4.2	7.0	7.0 ^{주2)}
부서(과) 수	8	8	8 ^{주3)}	11 ^{주4)}	11	12
十八(4) 十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실		

주1) 평균 자문회의 개최 건수(7.0회) × 2023년 담당부서 갯수(12과)

(출처: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자료)

- 따라서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부서별로 찾기에는 한계가 있고, 향후 자문회의 개최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주택·건축 소관분야를 포괄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3) 타 위원회와 역할 및 기능적 차별성

- 서울시는 현재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5)에 따라 타 위원회와의 역할 및 기능의 유사·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조례 제·개정 시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난 2022년 4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서울시 산하 23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후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위원회 신설시 총괄부서(조직담당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존속기한(2년)을 규정토록 함

주2) 평균 자문회의 개최 건수: 4년간 부서당 자문회의 개최 건수의 평균값

주3) 2021.7.18. 이전 실적

주4) 2021.7.19. 이후 실적

⁵⁾ 위원회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② 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 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

으로써 관행적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 10년간('21.12 기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 2011년 103개 였던 위원회 수는 2021년 238개로 약 2.4배 증가⁶)함에 따라, 비활성화된 위원회의 폐지 및 통합, 상설 위원회의 비상설 위원회 전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관점에서 자문단은 조례 제3장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임무 및 기능이 유사·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 될 수 있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 경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⁷⁾외에도 주거복 지센터의 설치·위탁 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제8조(설 치 및 기능)⁸⁾에서 정한 각종 계획. 평가 및 정책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

-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 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 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x27;11) $1037\% \rightarrow$ ('15) $1527\% \rightarrow$ ('18) $2037\% \rightarrow$ ('20) $2227\% \rightarrow$ ('21) 2387%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22.4.1.), 서울시, 238개 위원회 전수조사···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하고 운영 내실화)

^{7)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④ <u>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 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 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서 규정하는 사안을 심의9)(검토보고서 붙임3 참조)하는 반면.

- 자문단은 사회·경제·인구 변화 등에 따른 주거정책 방향, 혁신적 주택 건축디자인 발굴, 환경·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주 택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집중적이 고 지속적인 연구·자문과 협업체계 구현 등을 수행함으로써 주거정책심 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별성10)은 존재한다고 사료됨 (검토보고서 붙임4 참조).
- 한편, 자문단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구성·운용 중인 '도시계획 정책 자문단'¹¹)과 일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2년 12월 작성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기준 개선방안(행정

⁹⁾ 지난 10년('13.~'23.) 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에 있어 시기조 정과 관련한 사업시행인가(14건), 관리처분계획인가(24건)가 주된 심의대상이었으며, 이외 정책(5건), 조례개정(1건), 기타(2건) 순으로 나타남

심의대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책 ^{주1)}	조례개정	기타 ^{주2)}	합계
횟수(건)	14	27	5	1	2	49

주1) 정책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제도개선, 학술용역

주2) 심의 경과보고, 추진현황 보고

주3) 서울특별시(기조실장방침-2022.4.)에 따르면, 2020~2021년 간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을 이유로 2022년 2회, 2023년 1회 개최에 불과함.

자료: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자료 인용

¹⁰⁾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및 창의·혁신 포럼 운영계획(최초: '23.1.19. 수정: '23.1.31.)'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자문단 비교' 부분을 토대로 작성.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18. 1. 4.>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2부시장 방침)'12)에서 자문방식(자문시점과 횟수, 자문위원 구성 등)의 개선과함께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자문대상에 주택정책자문단의 자문대상(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등)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 주택·건축 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결과가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정책결정 및 집행상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주택정책자문단 간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4) 자문단의 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및 존속기간

○ 서울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¹³)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런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 제8조제4항¹⁴)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문단 위원을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¹²⁾ 도시계획국(도시계획상임기획과),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행정2부시 장-제275호, 2022.12.9)

¹³⁾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¹⁴⁾ 위원회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생 략)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②
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	
원으로 <u>구성한다.</u>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u>
	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u>다.</u>

- 자문단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주제15)는 ▲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설정, ▲ 주택시장 변화 대응 및 복잡한 사업유형 통합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혁신적 건축디자인에 대한 논의, ▲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친환경주거환경 조성 관련 논의 등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이 광범위한 주택 분야 중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분야 위원들을 소수(예: 5명 내외)로 구성한 후 해당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이 른바 '식물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일몰제 적용 근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9조의3제6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자문단의 존속

¹⁵⁾ 주택정책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및 창의·혁신 포럼 운영계획(최초:'23.1.19. 수정:'23.1.31.)'에서 기술한 '주요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p.5 참고) 2022.4. 서울시가 발표한 위원 회 내실화 방안을 고려할 때, 최초 자문단 존속기한을 "2년"으로 정하되 2년이 경과한 뒤 자문단의 운영실적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존속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일몰기한을 축소조정(5년→2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u>5년</u> 으로 한다.	⑥ <u>2년</u>

5) 종합의견

- 이 개정안은 시시각각 변모하는 주택·건축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단을 신설할 경우 부서별 개별자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이슈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연속성있게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서울시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문단이 위원회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운용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자문단의 위원 구성시 적용되는 특정 성별에 대한 위원 수 규정을 보완하고, ▲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서울시의 위원회 운용정책에 부응하여 5년에서 2년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끝으로, 자문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축정책 전문분 야에 적합한 자문위원의 선정·위촉이 전제되어야 하는바,16) 자문위원 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제3장의 제목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수정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을 포함함.
- 안 제9조의3제6항 중 "5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자문단 존속기한 을 축소 조정함.

Ⅷ.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¹⁶⁾ 최무현·조창현(2008)은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해당 위원회의 효과 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위원회의 균형적인 인적 구성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위촉과정 등에 대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함을 강조함.

최무현·조창현(2008),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과 정책 효과성: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6권2호, 25-5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 호 522

제안일자 : 2023. 02. 27. 제 안 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제3장의 제목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수정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을 포함함.
- 안 제9조의3제6항 중 "5년"을 "2년"으로 수정하여 자문단 존속기한을 축소 조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3장의 제목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함.
- 안 제9조의3제6항 중 "5년"을 "2년"으로 함.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한다.

안 제9조의3제6항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u> </u>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
	<u>· 운영 등)</u>	・운영 등)
	①~⑤ (생 략)	①~⑤ (개정안과 같음)
	<u>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5년</u>	⑥ <u>2년</u>
	<u>으로 한다.</u>	
	<u>⑦ (생 략)</u>	⑦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자문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장 <u>주거정책심의위원회</u>	제3장 <u>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u>
<u><신 설></u>	제9조의3(주택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등)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
	여 주택정책자문단(이하 "자문
	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자문
	<u>할 수 있다.</u>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u>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u>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
	고,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
	<u>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u>
	<u>다.</u>
	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
	<u>로 한다.</u>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